

수 신: 제이바이쥬(대표자 심은정)

2023. 02. 03.

발 신: 변호사 조태연

담당자: 안성은 (seahn@cholaw.com)

Cho & Partner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 6층




(전화: (02) 6207-6800, 팩스: (02) 6207-6801)

제 목: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요구 등

1. 폐소는 1936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고급 주얼리 회사인 FRED Paris (이하 ‘의뢰인’ 이라고 합니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의뢰인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LVMH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귀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뢰인의 브랜드는 국내의 수요자를 포함하여 전세계 각지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Force 10 컬렉션은 의뢰인 브랜드의 상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명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왔고,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에 관하여 아래의 상표등록 제40-1616020호(이하 ‘선 등록상표 1’ 이라 합니다.), 상표등록 제40-1284365호(이하 ‘선 등록상표 2), 국제상표등록 제1028647호(이하 ‘선 등록상표 3’ 이라 합니다.) 을 출원하여 각각 2020년 6월 16일, 2017년 9월 11일, 2014년 7월 1일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상표등록 제40-1616020호

상표등록 제40-1284365호

국제상표등록 제1028647호


4. 의뢰인은 최근 귀하가 귀하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FRED Paris의 시그니처인 Force 10 팔찌와 이미지가 유사한 팔찌를 판매하고, 해시태그에 선 등록상표2를 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별첨 1 참조).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역시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해시태그에 선사용상표 2 를 사용한 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해당 침해 제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성과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통상 타인의 성과모용행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매제품	귀하의 해당 침해제품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의 판매제품은 해양 새클에서 영감을 받은 교체 가능한 독특한 형상의 버클 부분과, 나일론/스틸케이블 혹은 골드체인 의 손목 스트랩 부분으로 이루어진 유니크한 스타일의 팔찌로서, FRED Paris 공식 홈페이지([https://www.fred.com/en\\_FR/force-10-2?lang=en\\_FR](https://www.fred.com/en_FR/force-10-2?lang=en_FR))에 전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판매제품의 독특한 디자인 및 종합적인 이미지는 동법 규정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침해제품은 의뢰인의 판매제품의 버클 형상과 유사한 버클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의뢰인의 판매제품의 디자인 및 종합적인 이미지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함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침해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의뢰인의 성과물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써, 상술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5.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조치의 대상이 됨은 물론, 형사상으로도 상표법에 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타인의 성과모용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귀하를 상대로도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기에 앞서 귀하의 협조에 의해 본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2023. 02. 15.까지 아래의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귀하의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침해제품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의 전시, 판매, 광고를 즉각적, 영구적으로 중지할 것

(2) 본 건 제품들에 대한 일체의 구매/판매정보(공급처, 구매 송장, 판매일자, 수량 및 금액 등) 및 재고정보(수량 및 금액 등)를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것.

(3) 침해제품을 폐기하고 분명한 영상 혹은 사진으로 폐기에 관한 증거  
를 제출할 것

- 보내실 곳: [seahn@cholaw.com](mailto:seahn@cholaw.com) 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8, 안제  
타워 6층

(4) 각서를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할 것

(5) 본건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의뢰인은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일 위 요구사항들이  
2023. 02. 15.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서 가능한 모든 법  
률상의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담 당: 안성은 변호사

. 전 화: (02) 6207-6800

. 팩 스: (02) 6207-6801

의뢰인의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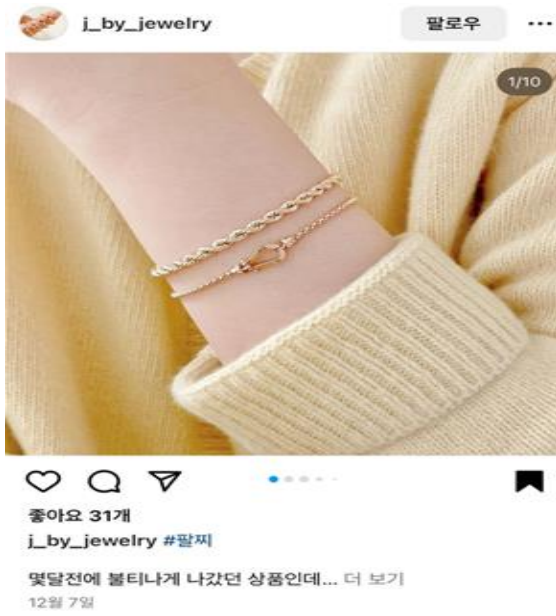
변호사 조 태 연

변호사 안 성 은

별첨 1. 해당 침해제품의 사진 및 견적서

2. 각서

별첨 1. 해당 침해제품 사진





## 별첨2.

### 각 서

본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Fred Paris (이하 “FRED” 라 합니다)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Force 10 컬렉션을 모방한 해당 침해제품들을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약속합니다.

I acknowledge that I sold goods using marks similar or identical to trademarks of FRED Paris and imitations of FRED Paris' Force 10 collection products, without authorization, and thereby committed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and hereby promise:

1. 향후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Force 10 컬렉션을 모방한 제품들을 포함하여, FRED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제품의 구매, 수입, 판매, 보관, 판매를 위한 제 공을 영구적으로 중지하겠습니다.

I agree to permanently discontinue purchasing, importing, detaining, selling and offering for sale products that infringe FRED' 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mitation products of the Force 10 collection.

2. 본인은 Force 10의 위조품과 같이 FRED 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들과 관련되거나 그 생산에 관련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모든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I also hereby commit to immediately remove all posts from any website, social media account, or internet platform relating to and reproduction of products that infringe FRED Par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mitation products of the Force 10 collection.

3. 본인은 침해제품을 폐기하고 그에 관하여 FRED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명확한 영상/사진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agree to destroy the infringing products and provide clear videos and/or photos showing the destroyed products to the satisfaction of FRED Paris.

4. 본건으로 인하여 FRED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agree to compensate FRED Paris for the damages it incurred as result of this case.

5. 이 각서는 본인의 승계자 혹은 본인 영업의 양수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This Undertaking shall be communicated to and be binding upon all our successors and assignees of XXXX.

6. 각서 내 위 약속에 위반할 경우 FRED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 the event of breach of the present Undertaking, I agree to pay compensate FRED Paris for the resulting damages.

2023. . .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FRED Paris 귀중